# 국무원 판공청의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5]23 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를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확실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실시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15 년 4 월 8 일

설명:

1. 현행 관계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를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네거티크 리스트에는 내국민대우 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험구, 광둥(廣東)자유무역시험구, 톈진(天津)자유무역시험구, 푸젠(福建)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로 통칭)에 적용된다.

2.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업종 분류> (GB/T4754-2011)에 근거하여 15 개 부문, 50 개 조목, 122 항의 특별관리조치로 구분된다. 그 중 특별관리조치는 개별 업종에 대한 조치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수평적 조치를 포함한다.

3.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 건전성, 정부조달, 보조, 특수수속 및 조세와 관련된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내의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과 연관된 경우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따라 안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외의 분야는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가 지침을 공표하여 유도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자유무역구내 투자는 <자유무역시험구내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가 체결한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협정,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조치는 관련 계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인쇄발부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된 날부터 실시하며 적절한 시기에 조정한다.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 순번 | 분야 | 특별관리조치 |
|---|---|---|
| **가.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 | |
| (1) | 종자업 | 1. 중국 특유의 희귀우량품종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2.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 선종·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3. 농작물 신품종의 선종·배양 및 종자 생산은 제한류에 속하며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4. 비준 없이 농작물의 생식질 자원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
| (2) | 어획 | 5.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br>6. 합작, 합자 등 방식으로 어선을 도입하여 관할수역에서 작업하기 위한 어선·어망용구(船網工具) 지표 신청은 비준하지 아니한다. |
| **나. 채굴업** | | |
| (3) |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의 탐사와 개발 | 7. 중국의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에 대한 자연자원 탐사·개발 활동 또는 여하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중국 대륙붕에 대한 시축작업은 반드시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
| (4) |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 8. 석유, 천연가스(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석탄층 가스 등 비상규 오일가스 포함)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 |
| (5) | 희토 및 희소광물의 채굴과 선별 | 9. 희토광 탐사, 개발 및 선광을 금지하며; 허가 없이 희토광구에 진입하거나 광산지질자료, 광석 견본 및 공정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br>10.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11. 방사성 광물의 탐사, 개발, 선광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6) | 금속광물 및 비금 | 12. 귀금속(금, 은, 백금류)의 탐사와 개발은 제한류에 속한다. |

| | | |
|---|---|---|
| | 속광물의 채굴과 선별 | 13. 리튬광의 개발과 선광은 제한류에 속한다.<br>14. 흑연광의 탐사와 개발은 제한류에 속한다. |
| **다. 제조업** | | |
| (7) | 항공제조 | 15. 간선 및 지선 항공기의 설계·제조·유지보수, 3 톤급 이상 민용 헬리곱터의 설계·제조, 지면·수면 효과 항공기의 제조, 무인항공기·경항공기의 설계·제조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16. 일반 항공기의 설계, 제조와 유지보수는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 |
| (8) | 선박 제조 | 17. 선박의 저속, 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18.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의 제조와 수리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19. 선박(단계별 포함) 수리, 설계와 제조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위위를 확보해야 한다. |
| (9) | 자동차 제조 | 20. 자동차 완성차, 전용 자동차의 제조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개 이하(두개 포함)의 동종류(승용차류, 상용차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측 합자 파트너와 공동으로 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두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br>21. 순수 전기승용차 생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반드시 자체브랜드를 사용해야 하고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실시권을 허여받은 관련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10) | 궤도교통설비 제조 | 22. 궤도교통 운수설비의 제조는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고속철도, 여객수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의 승객서비스 시설·설비의 연구개발, 설계와 제조; 고속철도, 여객수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의 궤도와 교량 설비의 연구개발, 설계와 제조; 전기화 철도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철도 여객차량 오염물 배출설비의 제조 등은 제외).<br>23.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는 설비 국산화 비율이 70%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

| | | |
|---|---|---|
| (11) | 통신설비 제조 | 24. 민간용 위성의 설계와 제조, 민간용 위성의 유효 하중 제조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25. 위성 TV 방송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은 제한류에 속한다. |
| (12) | 광물 제련 및 압연 가공 | 26.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 및 가황안티몬 포함) 등 희소금속의 제련은 제한류에 속한다.<br>27. 희토의 제련과 분리는 제한류에 속하며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br>28. 방사성 광물의 제련과 가공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13) | 의약 제조 | 29. <야생 약재자원 보호 관리조례> 및 <중국의 희귀 및 멸종위험 보호 식물 목록>에 명시된 한약재의 가공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30. 한약차의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방제약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14) | 기타 제조업 | 31.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선지·묵정(墨錠)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라.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 및 공급업** | | |
| (15) | 원자력 | 32.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33. 핵연료, 핵재료, 우라늄 제품 및 관련 핵기술의 생산경영과 수출입은 해당 자격을 구비한 중앙기업이 전문경영한다.<br>34. 국유기업 또는 국유지주기업만이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처리업에 종사할 수 있다. |
| (16) | 관망시설 | 35. 도시인구 50 만명 이상 도시의 가스, 열, 배급수 관망의 건설과 경영은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36. 송전망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 **마. 도소매업** | | |
| (17) | 전문경영 및 특허 경영 | 37. 연초 전매제를 시행한다. 연초 전매품(궐련, 여송연, 각연초, 이중건조 연초, 연초, 궐련지, 필터, 담배용 토우, 연초 전용 기계)의 생산, 판매와 수출입에 대해 전매 관리를 실시함과 더불어 연초 전매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연초, 궐련, 이중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제품의 도소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38. 중앙비축식량(식용유) 전매제를 시행한다. 중앙비축식량(중앙비축식용유 |

| | | |
|---|---|---|
| | | 포함)의 매입, 저장, 경영과 관리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가 구체적으로 책임진다.<br>39. 면세상품의 판매업무는 특허경영제와 집중적·통일적 관리를 실시한다.<br>40. 복권의 발행과 판매는 특허경영제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 **바. 교통운수, 저장 및 체신업** | | |
| (18) | 도로운수 | 41. 도로여객운수회사는 제한류에 속한다. |
| (19) | 철도운수 | 42. 철도간선망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43. 철도여객운수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 (20) | 수상운수 | 44. 수상운수회사(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설립한 국제선박운수기업은 제외)는 제한류에 속하고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된다 : (1) 중국국적의 선박 또는 선석을 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수상운수업무를 변칙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 중국 국내 수상운수업무; (2) 국내 선박 관리업무, 수상여객운수 주선업무 및 수상화물운수 주선업무.<br>45. 선박대리는 외국자본 비율이 51%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br>46. 외국선박 화물 검수(Tally)는 제한류에 속하며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br>47. 수상운수 경영자는 외국국적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수상운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되며, 중국정부의 허가를 득한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br>48. 중국 내 항구 사이의 해상운수와 인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단 선박이 경영해야 한다. 외국 국적의 선박이 중국 내 항구 사이의 해상운수와 인항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
| (21) | 공공항공운수 | 49. 공공항공운수기업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단일 외국투자자(그 관계회사 포함)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br>50. 공공항공운수기업의 이사장 및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 |

| | | |
|---|---|---|
| | | 51. 외국 항공기 경영자는 중국 경내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운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된다.<br>52. 중국이 지정한 운송업자만이 중국과 기타 당사국이 체결한 쌍무운수협정에 의해 정해진 쌍방향 항공운수 시장을 경영할 수 있다. |
| (22) | 일반 항공 | 53. 합작의 방식으로 농업·임엄·어업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반항공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며 기탕 일반항공기업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54. 일반항공기업의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br>55. 외국국적의 항공기 또는 외국국적인 자가 항공촬영, 원격 탐지 측량, 광물자원 탐사 등 중요한 전문 분야의 일반항공 운항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
| (23) | 민용공항 및 항공교통관제 | 56.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금지한다.<br>57. 민용공항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상대적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 (24) | 우정(郵政)업 | 58. 우정기업에 대한 투자와 우정 서비스 경영을 금지한다.<br>59. 편지의 국내속달 업무 경영을 금지한다. |
|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 | |
| (25) | 전기통신 전송 서비스 | 60. 통신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통신업무에만 한한다. 그 중 : 부가통신업무(전자 상거래 제외)는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기초통신업무의 경영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기초통신업무 전문회사이어야 하며 회사 지분 중 국유지분 또는 국유주식 비율이 51%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 (26) |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 61.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온라인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이용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대중정보 발표 서비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62. 인터넷 지도의 편집·제작과 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br>63.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와 외국투자자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

| | | |
|---|---|---|
| | | 업무 합작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 정부에 보고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아. 금융업 | | |
| (27) | 은행업 주주 기구 유형 요구사항 | 64. 은행업 금융기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 또는 특정 유형의 기구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br>(1) 외상독자은행의 주주, 중외합작은행의 외국 주주는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외국측 단독주주 또는 지배주주/주요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한다.<br>(2) 내자 상업은행,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이어야 한다.<br>(3)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촌(村)·진(鎭)은행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외국 은행이어야 한다.<br>(4) 금융리스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 또는 금융리스회사이어야 한다.<br>(5) 소비자금융회사의 주요 출자인은 금융기구이어야 한다.<br>(6) 자금중개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는 자금중개회사이어야 한다.<br>(7) 금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발기설립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br>(8)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금융기구이어야 한다. |
| (28) | 은행업 자격 요구사항 | 65. 은행업 금융기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일정한 액수의 자산총액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br>(1) 외자은행법인의 외국측 단독주주 또는 지배주주/주요주주, 외국 은행 지점의 모은행(母行);<br>(2) 중국계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촌(村)·진(鎭)은행, 신탁회사, 금융리스회사, 대출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국투자자;<br>(3)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기타 은행업 금융기구의 외구투자자.<br>66. 자금중개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관련 업무 연한, 글로벌 지점망 |

| | | |
|---|---|---|
| | |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 특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29) | 은행업 지분비율 요구사항 | 67. 내자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은행업 금융기구에 지분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단일 주주 지분비율 및 합계 지분비율의 제한을 받는다. |
| (30) | 외자은행 | 68. 주주의 기구 유형과 자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 외자은행은 아래 요건의 제한을 받는다.<br>(1) 외국 은행의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경영을 허용하는 '대리발행·대리환매·정부채권발행인수', '대리수불금', '은행카드 업무 종사'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중국 경내 공민이 예치하는 건당 위안화 100 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 유치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 공민을 상대로 위안화 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된다.<br>(2) 외국 은행 지점의 운영자금은 본사가 무상으로 지불해야 하고 운영자금의 일부는 특정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해당 관리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br>(3) 외국 은행의 지점은 위안화 운영자금 충족율(8%)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br>(4) 외자은행이 비준을 받아 위안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최소 개업시간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
| (31) | 선물회사 | 69. 선물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 (32) | 증권회사 | 70. 증권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외국자본 비율이 49%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br>71. 단일 외국투자자가 상장내자증권회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전체 외국투자자가 상장내자증권회사에 대해 보유(직접 보유 및 간접적인 통제 포함)한 지분비율이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 (33) |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 | 72.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외국자본 비율이 49%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 (34) | 증권 및 선물 거래 | 73. 증권거래소의 일반 회원자격 및 선물거래소의 회원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

| | | |
|---|---|---|
| | | 74. A주 증권계좌 및 선물계좌의 개설 신청을 금지한다. |
| (35) | 보험기구의 설립 | 75. 보험회사는 제한류(생명보험회사의 외국자본 비율이 50% 초과해서는 아니됨)에 속하며 국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자산관리회사 지분 합계가 75%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br>76.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신청하는 해외 금융기구(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는 중국보험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경영 연한, 총자산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36) | 보험업부 | 77.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부서의 비준 없이 그 관계사와 재보험의 출재 또는 수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
| **자. 임대 및 비지니스 서비스업** | | |
| (37) | 회계감사 | 78. 특수 일반 파트너십 회계사사무소의 수석 파트너(또는 최고 관리직책을 이행하는 기타 직무)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
| (38) | 법률 서비스 | 79. 외국 변호사사무소는 대표기구의 방식으로만 중국 진입이 가능하며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상주대표 파견 시 중국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br>80. 중국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br>81.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주중대표기구는 중국의 공인변호사(執業律師)를 채용해서는 아니되며 중국대표기구에 의해 채용된 보조인력은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 (39) | 통계조사 | 82. 외국과 연관성이 있는 조사기구에 대한 자격인정제도와 외국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조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제도를 시행한다.<br>83.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84. 시장조사는 제한류에 속하고 합자, 합작에만 한하되 그 중 라디오·TV 방송 청취율·시청율 조사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85. 등급 평가 서비스는 제한류에 속한다. |
| (40) | 기타 비지니스 서 | 86. 개인(사적 용무를 위한)출입국중개기구의 법정대표인은 경내 상주 호구 |

| | | |
|---|---|---|
| | 비스 | 를 보유한 완전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
| **차.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 | |
| (41) | 전문기술 서비스 | 87.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촬영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제도,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등급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전국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 지도/Ture 3D 지도의 편집·제작, GPS 전자지도 편집·제작, 지역적 지질도 제작/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88. 측량제도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89. 인체 줄기세포·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90.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금지한다. |
| **카.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 | |
| (42) | 동식물 자원 보호 | 91. 국가에서 보호하는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92.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식물의 채취 또는 매입을 금지한다. |
| **타. 교육** | | |
| (43) | 교육 | 93. 외국의 교육기구,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비(非)학제 직업기능 훈련 제외)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br>94. 외국의 교육기구는 중국 교육기구와 합작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중외합작의 방식으로 모든 등급 및 모든 유형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br>(1) 의무교육기구 또는 군사, 경찰, 정치 및 당원학교 등 특수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br>(2)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구, 종교대학과 종교 교직자는 중국 경내에서 합작교육기구의 설립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중외합작 교육기구는 종교교육을 진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br>(3) 일반 고등 교육기구, 고등 교육기구 및 취학전 교육은 제한류에 속하며 |

| | | |
|---|---|---|
| | |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중국 경내에서 정주(定居)하는 자이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원 수가 1/2 에 미달해서는 아니되며; 교육·교학 활동 및 교육과정 교과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파. 위생 및 사회사업** | | |
| (44) | 의료 | 95. 의료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 |
| **하. 문화, 체육 및 오락업** | | |
| (45) | 라디오·TV 방송, 전송, 제작, 경영 | 96. 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 방송 채널과 시간대 프로그램, 라디오·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주파수 전환 중계국 및 일반 중계국 포함], 라디오·TV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스테이션), 케이블 라디오·TV 방송 송출망 등) 설립과 경영을 위한 투자를 금지하며 라디오·TV·영상 신청프로 업무 및 위성 TV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취급을 금지한다.<br>97. 라디오·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98. 외국 위성방송 채널의 도입에 대한 심사비준제를 시행한다. 외국 영화·드라마를 도입하거나 위성전송 방식으로 기타 외국 TV 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정한 업체에 신고해야 한다.<br>99.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중외합작 제작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
| (46) | 신문출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금융정보 | 100. 통신사, 신문사·잡지사, 출판사 및 언론기구 설립을 위한 투자를 금지한다.<br>101. 외국의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으로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br>102. 외국 통신사가 중국 경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는 중국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br>103.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업무 경영 |

| | | |
|---|---|---|
| | | 을 위한 투자를 금지하며; 신문·정기간행물의 판면 경영을 금지한다.<br>104. 중외 언론기구의 업무협력, 중외합작의 신문출판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해야 하고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내 과학기술류 정기간행물과 해외 정기간물이 저작권 합작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되 합작기간이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작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내용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중국측이 확보해야 하며 외국측 인력력이 중국측 정기간행물의 편집,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br>105. 영화, 라디오·TV 방송 프로그램, 미술작품 및 디지털 문헌 데이터 베이스 및 기타 출판물 등 문화상품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br>106. 출판물 인쇄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br>107. 중국 정부의 비준 없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br>108. 외국 대중매체(외국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신문사, 잡지사, 도서출판사, 음향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회사 및 라디오·영화·TV 등 매스미디어 업체 포함)는 중국 경내에 대리기구 또는 편집부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 연락사무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
| (47) | 영화의 제작, 발행, 방영 | 109.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110. 중국 정부는 중외합작 방식의 영화 촬영·제작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br>111.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영화의 방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 방영시간 비례를 준수해야 한다. 방영업체의 연간 국산영화 방영시간이 연간 총 영화 방영시간의 2/3 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
| (48) | 인간문화재, 문화재 및 고고(考古) | 112. 문화재 경매업을 경영하는 경매기업과 문화재 매매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br>113. 국유 문화재 박물관 투자와 운영을 금지한다.<br>114. 이동 불가한 문화재와 국가에서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외국인 |

| | | |
|---|---|---|
| | |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br>115. 인간문화재 조사기구의 설립과 경영을 금지한다.<br>116.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인간문화재 조사와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고 전문 심사비준 허가를 거쳐야 한다. |
| (49) | 문화오락 | 117. 문화예술 공연단체의 설립을 금지한다.<br>118. 공연중개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해당 성(省)·시(市)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br>119.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과 경영은 제한류에 속한다. |
| **까. 모든 업종** | | |
| (50) | 모든 업종 | 120.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의 구성원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br>121.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상의 금지류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에 '합자에 한함', '합작에 한함', '합자, 합작에 한함', '중국측 지분우위', '중국측 상대적 지분우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외국자본의 비율에 대해 요구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상투자동업기업을 설립해서는 아니된다.<br>122.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 그가 보유한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으로 진행하는 출자가 외상투자 프로젝트 및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과 연관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